

독일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독일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약 110만ha(산림면적의 약 9%)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약 730만ha(산림면적의 약 64%)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Germany 인증서	고시안 [별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EU Timber regulation에 따라 사업자들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시판할 때 실사 시스템(Due dilige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독일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독일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등)되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 연방 산림 : 4%, 연방 주 국유림¹⁾ : 29%, 공유림 : 19%, 사유림 : 48% (이 중 절반은 20ha 미만)
- 독일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되니까?
 - ➔ 독일의 산림 경영은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림은 목재 수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천연림 개발 지역 : 총 5.6%, 법적으로 보장된 2%²⁾ (2013년)
 - NATURA 2000 산림 보호 지역 : 270 만 ha 또는 산림 면적의 24 %
 - 특정 사용의 제한이 있는 산림 보호 지역 : 산림 면적의 1.9 %
- 독일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 산림의 소유권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는 연방 산림청(연방정부)입니다. 모든 담당부처의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forstwirtschaft-in-deutschland.de/index.php?id=17&L=1>
 -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입자를 관리하는 부처는 연방농림부(BLE)입니다.
 - 연락처 : <Handel-mit-Holz@ble.de>
 - 웹 사이트 : https://www.ble.de/DE/Themen/Wald-Holz/Handel-Holz/handel-holz_node.html

1) 연방 산림은 연방정부 소유의 산림, 연방 주 국유림은 연방 주 소유의 산림으로, 두 산림 모두 국유림에 해당

2) 천연림 개발지역의 1/3(총산림 면적의 2%)는 자연발달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개벌이 금지되어있으나, 3.6%는 자발적으로 개발 가능함.

벌채 및 활용 허가 관련 사항

- 독일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 ➔ 산림 관리가 지속가능해야하며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는 “기본 체계” 를 제공하는 연방 산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의 최대 면적을 규제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연방산림법(연방 정부)에서 규제됩니다.
- 독일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 산림의 지속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벌채를 하기 위한 별도 허가는 필요 없으며 법으로 허용되는 것 이상의 개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숲에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큰 개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제는 각각의 지방 산림청에서 수행합니다.
-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 독일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현재, PEFC기준에 따라 약 730만ha(산림 면적의 약 64 %)가 인증되었고 약 110만ha(산림 면적의 약 9 %)가 FSC기준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일부 대규모 산림 소유자는 두 시스템에서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인증된 총 면적은 약 800만ha(일부 이중 인증으로 인해)로 추정됩니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독일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독일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독일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 ➔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목재 규제(EUTR)는 독일 내 산림 소유주나 (독일 내 불법 수확의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불법 벌채된 목재를 시장에 유통할 수 없도록 시행됩니다. (독일 내 불법 수확의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수입은 관할 당국 BLE(위 참조)에 의해 통제되므로 독일에서 수출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경우 불법적인 원산지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EUTR에 관한 정보 :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timber_regulation.htm

General Aspects

- How are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public, private, indigenous, etc.)? What is the percentage for each classification?
 - ➔ Federal forests : 4%, State forests of the Lander : 29%, Communal forests : 19%, Privately owned forests : 48% (with half of these covering less than 20 hectares)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 ➔ Forest Management in Germany is sustainable and multifunctional. Most forests can be used also for harvesting timber.
 - Forest area with natural forest development: 5.6% in total, 2% legally ensured (2013)
 - NATURA 2000 protected areas in forests: 2.7 million ha or 24% of the forest area
 - Forest protected areas with specific use restrictions: 1.9% of the forest area.
-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 ➔ This is depending on the ownership.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the forest owners in Germany are the forest authorities of the Lander (Federal states).
 - <https://www.forstwirtschaft-in-deutschland.de/index.php?id=17&L=1>
 -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importers of timber and timber products is the Feder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BLE)
 - Contact : <Handel-mit-Holz@ble.de>
 - Website : https://www.ble.de/DE/Themen/Wald-Holz/Handel-Holz/handel-holz_node.html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 * Including regions where harvesting is prohibited and timber species to be protected
 - ➔ There is a Federal Forest Law, which is providing the “framework” , regulating that the management of forest has to be sustainable and that in order to change a forest area into another landuse you need a permit. The details are regulated in the forest laws of the Lander (Federal States), which for example may regulate the maximum size of clearcuts.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 ➔ No further requirements than sustainability. A forest owner does not need a permit for harvesting timber in his forest but he is not allowed to make clearcuts bigger than allowed by law or changing forest into another landuse. Controls are done by the forest authority of the respective Land.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 How is the system managed?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 ➔ No.

Aspects Related to Internationally Accepted Certification

- Do you apply Certification Systems (FM or CoC) in your country which are accepted international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for example, FSC or PEFC?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 ➔ At present, about 7.3 million hectares (approx. 64% of the forest area) are certified according to PEFC criteria and approximately 1.1 million hectares (approx. 9% of the forest area) according to FSC criteria. Some large forest owners are certified by both systems. The total certified area in Germany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8 million hectares (due to some double certification).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 ➔ No.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German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 Are those systems of Germany accepted in other countries?
- ➔ Like in other EU member states the **EU Timber Regulation (EUTR)** is enforced in Germany to make sure no illegally harvested timber is put on the market, neither by forest owners in Germany (The risk of illegal harvesting within Germany is negligible anyhow.) nor by importers. As the imports are controlled by our competent authority BLE (see above) it can be said that for timber or timber products exported from Germany the risk of illegal origin is negligible.

Information on EUTR: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timber_regulation.htm